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대통령령을 발령한다

한약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이 지난 3월 제정·고시됐다. 그동안 한약업계가 이 관리규정의 제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국내 생약농사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관리규정은 제정됐다. 그리고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규정의 중요내용을 알아보고 생약농가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생약농가, 한약규격화 주체돼야

한약재 관리지침 ▲한약재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지침 ▲규격품대상한

상당부분을 수정했다. 따라서 이번의 제정된 관리규정은 중요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수입한약재의 관리, 규격품관리 부분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생약농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생약업계가 지난해부터 이 관리규정의 제정의 지대 한 관심을 보였지만,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의 생약농가의 소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이 관리규정으로는 수급의 조절되는 한약재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고시된다. 현재 한약재가 수급의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다. 즉 생약농가들이 수입한약재의 수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28종의 한약재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을 조절해야

농민생산 규격품도 진열판매하게 해달라 요구 「한약판매 또는 조제할 목적으로」 「애매하게 표현

수급의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한약재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고시된다. 현재 한약재가 수급의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다. 즉 생약농가들이 수입한약재의 수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28종의 한약재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을 조절해야

「한약재 수급조절규정」의 28종의 수입외국산 한약재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고시된다. 그러나 이 28종의 한약재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을 조절해야



◇ 정부는 수입한약재와 규격품을 관리해 나갈때 국내생약업계 보호를 최우선에 뒤야 한다.

또한 이 수급조절 한약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대한약공회 회원사도 산업을 육성하는데 동조할 이 사안이 조제할 목적으로 한약재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도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당국의 지도·감독이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 면 수입한약재의 품질검사도 산업을 육성하는데 동조할 이 사안이 조제할 목적으로 한약재의 유통을 촉진하는 데도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당국의 지도·감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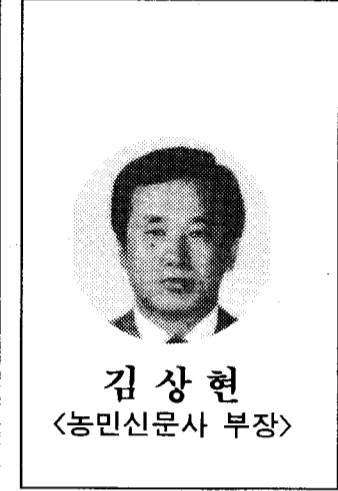
13명 수급조절 위원중 농민입장 대변 5명에 불과 대한약공 회원사 국내산 우선 구매토록 해야

이제 한약재의 규격화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저런 말의 많았지만 한약의 규격화는 시대적 요청사항이었다. 다만 생약농가 규격화 시현의 완성에 생약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약농가(농사주체)가 참여되도록 한다. 그러나 생약농가 규격화를 위한 규격품대상한 한약재의 관리규정 제23조(규격품대상한약)를 보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23조 ①항의 선규

결품대상한약이므로 고시된 것만 규격품이므로 관리하되, 수입한약재(제23조)는 한약재 조제용이므로 허가받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선안으로 정해진 실례가 뒤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후한판매라는 용어의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종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꼭 규격품을 진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문구인 것이

특 기 고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 한약관리지침을 이 규정으로 대체한 데 있다. 이제까지 생약재 배농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 ▲수입



김상현 <동민신문사 부장>

「한약재 수급조절규정」의 28종의 수입외국산 한약재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고시된다. 그러나 이 28종의 한약재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을 조절해야

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런데 현재의 관리규정 제23조(규격품대상한약)를 보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23조 ①항의 선규

9, 5백9, 209으로
용기 또는 포장의 기
재사항도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현재 규격
품으로 소포장돼 유통되고
있는 포장들이 한약
재의 경우 기재사항이
허술한데 앞으로 규격
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이 기재사항을 지켜
야 한다. 참고로 관리규
정 제30조가 정하고 있
는 용기 또는 포장의 기
재사항인 ▲제조업자의
상명·주소·전화번호 ▲
제품명 ▲제조방법과 사
용기한 ▲중량 또는 용
량이나 개수 ▲가격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선상 ▲항이
·효과 ▲제정방법 ▲규
격품이란 문자 ▲원산지
등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인 용량의 용기나 포
장지체의 무게를 포함시
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